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b>12월 19일(수) 조간부터</b> 사용하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b>12월 18일(화) 12시</b> ]			
배포일	2018년 12월 17일(월) (총 11쪽)	담당부서 담 당 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이소연 대리 (043-880-5835)

## 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경고음, 호출버튼 등 안전시설 개선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 커 발빠짐·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내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 차(±1.5cm) 기준으로 조사

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 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 □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시급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과 가까워 추락사고 우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 사례] 호출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휠체어 리프트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 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함(2017.10.20.)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었고, 3개소(27.3%)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 중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개소

\*\* 호출버튼이 2개인 경우 계단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 측정

#### □ 지하철 역사 진입 어렵고 환승 안내도 미흡해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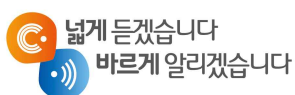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별 출입구 2곳씩 조사(35개소 x 2곳)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 중 환승역 17개소의 환승구간

#### □ 장애인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기준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 붙임 >

### 1 일반현황

#### □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 (주요내용) 교통사업자<sup>1)</sup>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19조 제1항, 제4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 (주요내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함(제7조, 제8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 교통약자법)
  - (주요내용)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등을 포함함(제9조, 제10조).
  - (지하철 역사 관련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sup>2)</sup>) 지하철 역사 내 매개시설, 내부시설, 안내시설 등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동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 [ 지하철 역사 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주요 세부기준 ]

구분	주요 내용
보행접근로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li> <li>▪ 경사로의 유효폭</li> </ul>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장과 승강기 간 바닥 간격</li> <li>▪ 이용자 조작설비(스위치) 높이</li> <li>▪ 스위치 내 점자표지판 설치</li> <li>▪ 음향신호장치</li> <li>▪ 광감지식 개폐장치</li> <li>▪ 되열림장치</li> <li>▪ 승강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li> </ul>
에스컬레이터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이동손잡이 및 수평고정손잡이</li> <li>▪ 계단 전면 점형블록 설치</li> <li>▪ 수평고정손잡이 내 점자표지판 부착</li> </ul>
점자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블록 설치장소, 규격, 색상, 설치방법</li> </ul>
승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li> <li>▪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li> </ul>
휠체어리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호출벨 설치</li> <li>▪ 작동설명서 부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화장실, 유도·안내시설, 경보·피난시설,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개찰구, 임산부 휴게시설 등</li> </ul>

\* '휠체어리프트'에 관한 세부규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명시됨<sup>3)</sup>.

1) 동법 제 19조제1항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를 따름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여객시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주요내용) 승강장과 차량 간격, 승강장 높이, 계단·엘리베이터 등 도시철도 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시설 이용 편리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sup>4)</sup>.

**[ 도시철도법 내 교통약자시설 관련 주요 세부기준 ]**

구분	주요 내용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차 있을 경우 계단과 병행하여 경사로 설치</li> <li>▪ 경사로의 유효폭</li> </ul>
점자표시판, 점자블록 및 유도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컬레이터 전·후 공간 점자타일 설치</li> <li>▪ 엘리베이터 설치 정거장의 경우, 외부계단 입구에 지상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곳까지 동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안내를 연결성 있게 표시</li> </ul>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조작 후 여유있게 개폐</li> <li>▪ 엘리베이터면과 구조물 바닥면과의 이격거리</li> <li>▪ 음성안내장치 설치</li> </ul>
휠체어리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리프트 전면 유효바닥 면적</li> <li>▪ 휠체어리프트에 호출버튼 설치 및 작동설명서 부착</li> </ul>

3)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등 편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교통약자법 제10조 제3항)

4) 강병근, 이주형, 김상운, 강태성, 변성현, 도시철도 역사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요소에 관한 연구(2014.5.)

## 2

#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및 주요결과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소재 지하철 역사 35개소

※ 전국 도시철도 역사 수·승차인원·주요 환승역 등 고려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수 및 대상 선정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합계
조사 대상	14(40.0)	1(3.0)	4(11.4)	4(11.4)	4(11.4)	4(11.4)	4(11.4)	35(100.0)

- (조사기간) 2018.9.7. ~ 10.4.

- (조사내용) 지하철 역사의 외부 출입구에서 지하철까지 이르는 동선 상 장애인 이동 편의·안전실태

·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여부, 관리실태, 위해요소 등 현장조사

\* 동법에 기준이 없는 경우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및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기준을 따름

· (환승로) 지하철 환승 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수단 및 안내표지 설치 실태 현장조사

#### ■ 주요결과

[단위 : 개소, (%)]

조사 항목		조사 결과	비고	조사 항목		조사 결과	비고
승강장-지하철 간 간격·높이	간격 기준 부적합	30/35(85.7)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	평균 114cm	관련규정 없음
	높이 기준 부적합	10/35(28.6)			역무원 호출버튼 미작동		
	승강장 간격 넓다는 주의표지 미설치	18/30(60.0)				3/11(27.3)	
에스컬레이터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 미작동	26/34(76.5)	관련규정 없음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미설치	12/31(38.7)	
	수평고정손잡이 미설치	3/34(8.8)			점형블록 미설치		
	수평고정손잡이 내 점자표지 미설치	15/31(48.4)				24/61(39.3)	
엘리베이터	비상 시 문자연락처 미안내	35/35(100.0)	관련규정 없음	환승로	안내표지 미흡	9/26(34.6)	
	비상호출버튼 점자표지 미설치	16/35(45.7)					
	광감지식 개폐장치 미작동	6/35(17.1)	임의 사항				
	음향신호장치 미작동	21/35(60.0)					

□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 설치된 지하철 간 간격 및 높이

- (간격5) 35개소 중 30개소(85.7%)는 승강장과 차량의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까지 측정됨.

[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 기준 준수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기준 준수(5cm이하)	기준 미준수(5cm 초과)	합계
간격	5(14.3)	30(85.7)	35(100.0)

※ 평균 8.04cm, 최소 3cm ~ 최대 15cm



- (주의안내6)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다는 주의안내 표지가 미설치되어 있었음.

[ 간격 넓은 주의안내 표지 여부 ]

[ 주의안내 표지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주의 표지	12(40.0)	18(60.0)	30(100.0)



- (높이7)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높이 차이 기준(1.5cm)을 미준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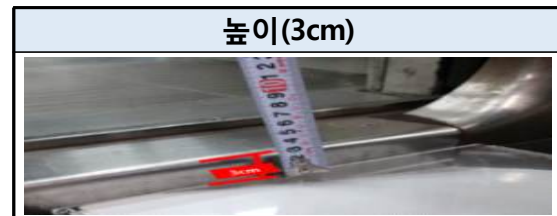
[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 기준 준수 여부 ]

[ 높이 차가 큰 사례 ]

[단위 : 개소, (%)]

구분	기준 준수 (1.5cm 이하)	기준 미준수 (1.5cm 초과)	합계
높이	25(71.4)	10(28.6)	35(100.0)

※ 평균 0.96cm, 최소 0cm ~ 최대 3cm



5)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cm 이내여야 하며, 곡선구간 등 구조적으로 간격이 넓은 경우 간격이 가장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해야함(단,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6) 구조적 이유로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을 경우 이에 대한 경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7) 승강장 바닥면과 차량 바닥면 간의 높이 차는 ±15mm 이내가 되어야 함(「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에스컬레이터

-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를 제외한 34개소 중 26개소(76.5%)는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들리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 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승차 시 경고음 발생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경고음	8(23.5)	26(76.5)	34(100.0)

- (수평고정손잡이<sup>8)</sup>) 34개소\* 중 3개소(8.8%)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 (점자표지판<sup>9)</sup>)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되어있는 31개소 중에서도 15개소 (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었음.

[ 에스컬레이터 수평고정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수평고정손잡이 O		수평고정손잡이 X	합계
	31(91.2)			
	점자표지판 O	점자표지판 X		
	16(51.6)	15(48.4)		



8) 에스컬레이터의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9) 에스컬레이터의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2012.12.)

## □ 엘리베이터

- (문자 가능한 연락처 안내) 양방향 음성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연락처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된 곳은 35개소 중 한 곳도 없었음.
- (비상호출버튼 점자표지판 부착<sup>11)</sup>) 16개소(45.7%)는 엘리베이터 비상호출버튼 위에 설치된 덮개에 점자표지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웠음.  
※ 점자표지 없이 버튼을 막아놓은 경우 포함

### [ 비상호출버튼 점자표지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점자표시	19(54.3)	16(45.7)	35(100.0)



- (광감지식 개폐장치) 6개소(17.1%)는 모형 손<sup>12)</sup>을 감지하지 못해 손이 끼인 채로 문이 완전히 닫혔음.
- 「교통약자법」에서는 사람이나 물체가 문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이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광감지식 개폐장치'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음<sup>13)</sup>.  
※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302, 2018.3.5.)

### [ 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작동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광감지식 개폐장치	29(82.9)	6(17.1)	35(100.0)

### 광감지식 개폐장치 미작동으로 손이 끼임



- (엘리베이터 음향신호장치<sup>14)</sup>) 21개소(60.0%)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음.

11) 승강기의 조작반 및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12) 우리나라 5세 어린이 손을 모델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작('15년)한 모형 손. 크기 :경지(첫째마디:10.6mm, 둘째마디: 12.1mm), 중지(첫째마디:11.4mm, 둘째마디:12.3mm)

13) (광감지식 개폐장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1.4미터 이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되열림장치)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엘리베이터의 내·외부에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 등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 간 거리)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역사 11개소의 휠체어리프트 조작반 내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 평균 114cm(최소 61cm ~ 최대 196cm)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호출버튼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 호출버튼이 2개인 경우 계단과 가까운 곳의 거리를 측정

\*\* 호출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휠체어 리프트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계단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음.

### [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짧은 사례 ]



○ (역무원 호출버튼<sup>16</sup>) 작동 여부) 11개소(100.0%) 모두 역무원 호출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중 3개소(27.3%)는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버튼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음.

### [ 휠체어 리프트 역무원 호출버튼 작동 여부 ]

[단위 : 개소, (%) ]

구분	O	X	합계
역무원 호출버튼 작동	8(72.7)	3(27.3)	11(100.0)

15) 한겨레,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또 사망사고...유족 "공사 책임 물어야"(2018.3.15.)

16) 승강장에는 휠체어 리프트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해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출입구 안내표지·환승안내 등

- (이동편의시설 위치 안내표지17) 조사대상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 등의 부재로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위치 안내 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표지판 내 엘리베이터 등 이동수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음.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별 출입구 2곳씩 조사(35개소×2곳)

[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안내 표지 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이동편의시설 안내 표지	19(61.3)	12(38.7)	31(100.0)



- (출입구 점형블록 점형블록19) 단차가 있는 출입구 61곳\* 중 24곳(39.3%)은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여부 ]

[ 점형블록 미설치 ]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점형블록	37(60.7)	24(39.3)	61(100.0)



17) 외부 출입구 주변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1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2012.12.)

19) 여객시설 주 출입구, 계단의 사·종점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해야 함(바닥재의 질감 다르게 사용 가능,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 사용 가능).

- (환승로 안내) 조사대상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환승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 중 환승역 17개소의 환승구간



- (주요 문제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환승 안내표지가 아예 없거나 엘리베이터에 '환승 방향' 및 '외부 출구 방향' 등 행선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환승이 어렵거나, 환승 중 이용해야 하는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미리 안내하지 않아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
-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이동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의 동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승동선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환승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음.

### [ 장애인 환승 안내표지 정보제공 실태 ]

[단위 : 개, (%)]

구분	양호	미흡	합계
휠체어 이용자 환승 안내 미흡	17(65.4)	9(34.6)	26(100.0)

### [ 장애인 환승 안내표지 설치 사례 ]

잘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승 엘리베이터와 '나가는 곳' 엘리베이터를 색깔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li> </ul>	
미흡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 안내표지에 엘리베이터 행선지에 대한 안내가 없고, 엘리베이터 외부에만 안내표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환승안내가 없이, 출구 방향 엘리베이터 안내만 있음</li> </ul>